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58
----------	------

제출년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062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 변경, 조정금 산정,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사항 등 심의·의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불요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2.11. 2. ~ 11.22)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완료

(3)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 재조사 사업”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실장·과장·국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제정안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한 바,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된다.

3. 미첨부 사유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

※ 제3조제1항제1호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성자

- 기획행정국 종합민원실장 이 규 태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